

● 제332회 임시회 ●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복지실,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의안번호 3125

###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시장
- 나. 제 출 일 : 2025. 8. 29.
- 다. 회 부 일 : 2025. 8. 29.

####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

##### 가. 세입예산

##### 1) 여성가족실

- 여성가족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조 5,965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억 4,800만원(0.5%)이 증액되었음.
- 세입 증액의 주요 원인은 일반회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2,524억 1,500만원 대비 58억 3,600만원이 증액된 2,582억 5,100만원임.

〈표〉 여성가족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 구분         |         | 2024예산    | 2025년도       |             |                 |
|------------|---------|-----------|--------------|-------------|-----------------|
|            |         |           | 추경예산안<br>(A) | 기정예산<br>(B) | 증감(비율)<br>(A-B) |
| 합 계        |         | 1,613,713 | 1,596,528    | 1,588,180   | 8,348(0.5)      |
| 일반회계       |         | 1,588,494 | 1,570,246    | 1,561,898   | 8,348(0.5)      |
| 세외수입       | 경상적     | 917       | 1,183        | 1,183       | -               |
|            | 임시적     | 92,034    | 92,063       | 92,063      | -               |
|            | 자녀연도 수입 | 9,273     | 11,893       | 11,893      | -               |
| 국고보조금등     |         | 1,229,061 | 1,206,856    | 1,204,344   | 2,512(0.2)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 257,210   | 258,251      | 252,415     | 5,836(2.3)      |
| 균형발전특별회계   |         | 25,218    | 26,282       | 26,282      | -               |
| 국고보조금 등    |         | 24,885    | 25,939       | 25,939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 333       | 343          | 343         | -               |

## 2) 복지실

- 복지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7조 2,876만 2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77억 8백만원(△0.8%)이 감소되었음. 세입 감액의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금의 감액에서 비롯됨.

〈표〉 복지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 구분            |            | 2024예산    | 2025년도    |           | 증감(비율)  |      |
|---------------|------------|-----------|-----------|-----------|---------|------|
|               |            |           | 추경예산      | 기정예산      |         |      |
| 합 계           |            | 6,780,574 | 7,287,621 | 7,349,399 | △61,778 | △0.8 |
| 일반회계          |            | 4,854,859 | 5,274,825 | 5,336,603 | △61,778 | △1.2 |
| 세외수입          | 경상적        | 11,928    | 13,508    | 13,508    | -       | -    |
|               | 임시적        | 68,602    | 80,664    | 80,664    | -       | -    |
|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 5         | 5         | 5         | -       | -    |
|               | 지난연도 수입    | 3,673     | 2,694     | 2,694     | -       | -    |
| 국고보조금 등       |            | 4,758,726 | 5,160,183 | 5,221,961 | △61,778 | △1.2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11,925    | 17,771    | 17,771    | -       | -    |
| 균형발전특별회계      |            | 10,552    | 10,636    | 10,636    | -       | -    |
| 국고보조금 등       |            | 10,552    | 10,552    | 10,552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84        | 84        | -       | -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1,915,163 | 2,002,160 | 2,002,160 | -       | -    |
| 세외수입          | 경상적        | 1,586     | 1,416     | 1,416     | -       | -    |
|               | 임시적        | 2,376     | 2,923     | 2,923     | -       | -    |
|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 640       | 774       | 774       | -       | -    |
| 국고보조금 등       |            | 952,715   | 1,019,580 | 1,019,580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957,846   | 977,467   | 977,467   | -       | -    |

3) 시민건강국

-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2,587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6,300만원(0.6%)이 감액되었음.
- 세입 감액의 주요 원인은 국비 교부액 변경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15억 6,000만원 감액임.

〈표〉 시민건강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2024년도<br>최종예산 | 2025년도 예산 |           |         |
|---------------|---------|----------------|-----------|-----------|---------|
|               |         |                | 기정예산(A)   | 추경 예산안(B) | 증감(B-A) |
| 합 계           |         | 225,371        | 260,313   | 258,750   | △1,563  |
| 일반회계          |         | 225,371        | 260,313   | 258,750   | -       |
| 세외수입          | 경상적     | 40,991         | 38,073    | 38,073    | -       |
|               | 임시적     | 29,375         | 33,209    | 33,209    | -       |
|               | 행정제재부과금 | 5              | 5         | 5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국고보조금         |         | 150,613        | 183,743   | 182,180   | △1,563  |
| 지방채           |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2,872          | 3,746     | 3,746     | -       |

## 나. 세출예산

### 1) 여성가족실

- 여성가족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조 3,392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억 3,000만원(0.2%)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여성가족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4예산    | 2025년도    |           | 증감(비율)<br>(기정예산대비) |
|----------|-----------|-----------|-----------|--------------------|
|          |           | 추경예산      | 기정예산      |                    |
| 합 계      | 3,321,279 | 3,339,234 | 3,331,404 | 7,830(0.2)         |
| 소계(일반회계) | 3,242,061 | 3,254,633 | 3,246,803 | 7,830(0.2)         |
| 행정운영경비   | 1,007     | 813       | 813       | -                  |
| 재무활동     | 8,467     | 6,946     | 6,946     | -                  |
| 사업비      | 3,232,586 | 3,246,874 | 3,239,044 | 7,830(0.2)         |
| 소계(특별회계) | 79,218    | 84,601    | 84,601    | -                  |
| 사업비      | 78,833    | 84,152    | 84,152    | -                  |
| 재무활동비    | 385       | 449       | 449       | -                  |

### 2) 복지실

- 복지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1조 4,087억 5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복지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4예산     | 2025년도     |            | 증감(비율)        |
|--------|------------|------------|------------|---------------|
|        |            | 추경예산       | 기정예산       |               |
| 합 계    | 10,500,153 | 11,408,753 | 11,478,236 | △69,484(△0.6) |
| 행정운영경비 | 729        | 813        | 813        | -             |
| 재무활동   | 858,698    | 1,032,063  | 1,032,063  | -             |
| 사업비    | 9,640,726  | 10,375,876 | 10,445,360 | △69,484(△0.7) |

3) 시민건강국

-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7,737억 5,000만원 대비 15억 2,900만원 감소(△0.2%)한 7,722억 2,100만원임.

〈표〉 시민건강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추경예산(안)               | 기정예산                  | 증 감                 | 증감률  |
|------|--------|-----------------------|-----------------------|---------------------|------|
| 일반회계 | 계      | (x182,180)<br>772,221 | (x183,743)<br>773,750 | (x△1,563)<br>△1,529 | △0.2 |
|      | 사업비    | (x181,800)<br>754,629 | (x183,363)<br>755,978 | (x△1,563)<br>△1,349 | △0.2 |
|      | 행정운영경비 | (x380)<br>10,597      | (x380)<br>10,777      | (x-)<br>△180        | △1.7 |
|      | 재무활동   | 6,995                 | 6,995                 | -                   | -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 1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사유

- 정부는 경기 부진의 장기화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대응하고, 국세수입 부족 등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총 30.5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2025년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함.<sup>1)</sup>
- 정부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확정되었으며, 이에 서울시에서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8월 2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함.
- 서울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799억원으로 2025년 기정예산의 2.1% 수준임. 이번 서울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한 3,500억 원 규모 지방비 부담과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중점 반영, 고물가·경기침체로 어려운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함<sup>2)</sup>.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가족실 3조 3,392억원(증 78억), 복지실 11조 4,087억원(감 695억원), 시민건강국 7,722억원(감 15억원)이 제출되었음.

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2)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보도자료(2025. 8. 28.) “서울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포함 1조799억 원 규모 올해 두 번째 추경안 편성”



- 여성가족실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불용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조정하여 총 2개 사업에서 138억원의 증액 편성을 실시하였으며, 4개 사업에서 59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 복지실은 정부 추경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복지부 증액에 따른 사업은 총 7개(6,044백만원)로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관련 사업 6건, 긴급복지지원 사업 1건으로 편성됨. 또 복지부 감액에 따른 사업은 총 3건(75,528백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 3건으로 편성됨.
- 시민건강국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감추경과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발맞추기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총 16건 가운데 증액 편성은 총 4건, 49억 8,200백만원, 감액편성은 총 12건, 65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가. 여성가족실

### 1) 세입

#### 가) 세입예산 총괄

- 여성가족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총 83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가운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43억 276만 원 증)을 증액 편성하였고,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1억 5,120만원 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16억 2,595만원 감),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1,392만원 감)은 감액 편성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교육청 전입금으로 58억 3,6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표〉 여성가족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 구분         |         | 2024예산    | 2025년도    |           | 증감(비율)<br>(기정예산대비) |
|------------|---------|-----------|-----------|-----------|--------------------|
|            |         |           | 추경예산      | 기정예산      |                    |
| 합 계        |         | 1,613,713 | 1,596,528 | 1,588,180 | 8,348(0.5)         |
| 일반회계       |         | 1,588,494 | 1,570,246 | 1,561,898 | 8,348(0.5)         |
| 세외수입       | 경상적     | 917       | 1,183     | 1,183     | -                  |
|            | 임시적     | 92,034    | 92,063    | 92,063    | -                  |
|            | 자녀연도 수입 | 9,273     | 11,893    | 11,893    | -                  |
| 국고보조금등     |         | 1,229,061 | 1,206,856 | 1,204,344 | 2,512(0.2)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 257,210   | 258,251   | 252,415   | 5,836(2.3)         |
| 균형발전특별회계   |         | 25,218    | 26,282    | 26,282    | -                  |
| 국고보조금 등    |         | 24,885    | 25,939    | 25,939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 333       | 343       | 343       | -                  |

## 2) 세출

### 가) 세출예산 총괄

- 여성가족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3조 3,392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억 3,000만원(0.2%)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여성가족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4예산    | 2025년도    |           | 증감(비율)<br>(기정예산대비) |
|----------|-----------|-----------|-----------|--------------------|
|          |           | 추경예산      | 기정예산      |                    |
| 합 계      | 3,321,279 | 3,339,234 | 3,331,404 | 7,830(0.2)         |
| 소계(일반회계) | 3,242,061 | 3,254,633 | 3,246,803 | 7,830(0.2)         |
| 행정운영경비   | 1,007     | 813       | 813       | -                  |
| 재무활동     | 8,467     | 6,946     | 6,946     | -                  |
| 사업비      | 3,232,586 | 3,246,874 | 3,239,044 | 7,830(0.2)         |
| 소계(특별회계) | 79,218    | 84,601    | 84,601    | -                  |
| 사업비      | 78,833    | 84,152    | 84,152    | -                  |
| 재무활동비    | 385       | 449       | 449       | -                  |

나) 부서별 세출예산

- 여성가족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추경안은 총 3개 부서에서 편성되었으며, 추경 편성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영유아담당관 2건(138억 2,000백만원) 증액편성되었고, 아동담당관 3건(46억 4,100만원), 저출생담당관 1건(13억 4,900만원) 순으로 감액편성되었음.

〈표〉 여성가족실 소관 부서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기정예산<br>(A) | 추경내역<br>(B) | 추경예산(안)<br>(C=A+B) | 증감률<br>(B/A) | 건수 |
|--------|-------------|-------------|--------------------|--------------|----|
| 계      | 3,331,404   | 7,830       | 3,339,234          | 0.2          | 6  |
| 저출생담당관 | 148,520     | △1,349      | 147,171            | △0.9         | 1  |

| 구분      | 기정예산<br>(A) | 추경내역<br>(B) | 추경예산(안)<br>(C=A+B) | 증감률<br>(B/A) | 건수 |
|---------|-------------|-------------|--------------------|--------------|----|
| 양성평등담당관 | 91,871      | -           | 91,871             | -            | -  |
| 영유아담당관  | 2,103,974   | 13,820      | 2,117,794          | 0.7          | 2  |
| 아이돌봄담당관 | 105,434     | -           | 105,434            | -            | -  |
| 아동담당관   | 670,277     | △4,641      | 665,636            | △0.7         | 3  |
| 가족담당관   | 210,263     | -           | 210,263            | -            | -  |
| 아동복지센터  | 1,064       | -           | 1,064              | -            | -  |

#### 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 여성가족실 세출예산 추경안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총 2개 사업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먼저 영유아 보육료 지원(증 79억 8,4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증 58억 3,600만원)은 국비 변경내시 반영 및 전입금으로 증액되었음.
- 감액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우선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13억 4,900만원 감)는 자체시비를 감액편성한 것이고, 나머지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2억 1,600만원 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43억 9,000만원 감),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3,480만원 감)은 국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감액되었음.

〈표〉 여성가족실 세부사업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연<br>번 | 세부사업명                   | 추경예산<br>(A)                       | 기정예산<br>(B)                       | 증감액<br>(A-B)                 | 증감사유 및 내역                                                                                                                                                                                                  |
|--------|-------------------------|-----------------------------------|-----------------------------------|------------------------------|------------------------------------------------------------------------------------------------------------------------------------------------------------------------------------------------------------|
|        | <b>합 계<br/>(여성가족실)</b>  | <b>(x1,232,795)<br/>3,339,234</b> | <b>(x1,230,283)<br/>3,331,404</b> | <b>(x2,512)<br/>7,830</b>    |                                                                                                                                                                                                            |
|        | <b>소 계<br/>(저출생담당관)</b> | <b>(x39,971)<br/>147,171</b>      | <b>(x39,971)<br/>148,520</b>      | <b>(x0)<br/>△ 1,349</b>      |                                                                                                                                                                                                            |
| 1      | 서울시 중소기업 위라밸<br>포인트제    | (x0)<br>578                       | (x0)<br>1,927                     | (x0)<br>△ 1,349              | <b>[자체시비]</b><br>○ 실수요를 반영한 지원금 재산정에 따른 감액<br>-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감424백만원<br>- 육아휴직 동료응원 수당 지원 : 감505백만원<br>-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 감420백만원                                                                     |
|        | <b>소 계<br/>(영유아담당관)</b> | <b>(x793,602)<br/>2,117,794</b>   | <b>(x789,299)<br/>2,103,974</b>   | <b>(x4,303)<br/>13,820</b>   |                                                                                                                                                                                                            |
| 2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x308,322)<br>572,415             | (x304,019)<br>564,431             | (x4,303)<br>7,984            | <b>[국비]</b><br>○ 하반기 0~2세 보육료 및 기관보육료 지원<br>단가 인상(5%)<br>: 증7,984백만원(국45:시38.5:구16.5)<br>- 0~2세 보육료 단가 인상분 : 6,867백만원<br>24,000원X57,112명X6월X83.5%<br>- 기관보육료 단가 인상분 : 1,117백만원<br>20,000원X11,146명X6월X83.5% |
| 3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x0)<br>198,262                   | (x0)<br>192,426                   | (x0)<br>5,836                | <b>[자체시비(전입금)]</b><br>○ 교육부 5세 무상보육 지원 추진<br>: 증5,836백만원(교육청 전입금100%)<br>- 70,000원x13,896명x6개월                                                                                                             |
|        | <b>소 계<br/>(아동담당관)</b>  | <b>(x288,750)<br/>665,636</b>     | <b>(x290,541)<br/>670,277</b>     | <b>(x△1,791)<br/>△ 4,641</b> |                                                                                                                                                                                                            |
| 4      | 입양대상아동 보호비<br>지원        | (x462)<br>660                     | (x613)<br>876                     | (x△ 151)<br>△ 216            | <b>[국비]</b><br>○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 감216백만원<br>- △1,000,000원x18명x12개월                                                                                                                                            |
| 5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x5,233)<br>18,472                | (x6,859)<br>22,862                | (x△ 1,626)<br>△ 4,390        | <b>[국비]</b><br>○ 가내시 인원 44,682명 대비 '25년말 지원인원<br>최종 18,891명으로 예상되어 1차(13,394명분)<br>감액 후 2차(12,397명분) 감액 : 감4,390백만원<br>- △12,397명x90,000원x12개월/평균 저축율 약0.328                                               |
| 6      |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br>보호비 지원   | (x56)<br>139                      | (x70)<br>174                      | (x△ 14)<br>△ 35              | <b>[국비]</b><br>○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 감35백만원<br>- △11.6명x250,000원x4주x3개월                                                                                                                                      |

## 나. 복지실

### 1) 세입

#### 가) 세입예산 총괄

- 복지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7조 2,876억 2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을 617억 7천8백만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균형발전기금 특별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추경편성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복지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 구분            |            | 2024예산    | 2025년도    |           | 증감(비율)  |      |
|---------------|------------|-----------|-----------|-----------|---------|------|
|               |            |           | 추경예산      | 기정예산      |         |      |
| 합 계           |            | 6,780,574 | 7,287,621 | 7,349,399 | △61,778 | △0.8 |
| 일반회계          |            | 4,854,859 | 5,274,825 | 5,336,603 | △61,778 | △1.2 |
| 세외수입          | 경상적        | 11,928    | 13,508    | 13,508    | -       | -    |
|               | 임시적        | 68,602    | 80,664    | 80,664    | -       | -    |
|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 5         | 5         | 5         | -       | -    |
|               | 지난연도 수입    | 3,673     | 2,694     | 2,694     | -       | -    |
| 국고보조금 등       |            | 4,758,726 | 5,160,183 | 5,221,961 | △61,778 | △1.2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11,925    | 17,771    | 17,771    | -       | -    |
| 균형발전특별회계      |            | 10,552    | 10,636    | 10,636    | -       | -    |
| 국고보조금 등       |            | 10,552    | 10,552    | 10,552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84        | 84        | -       | -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1,915,163 | 2,002,160 | 2,002,160 | -       | -    |
| 세외수입          | 경상적        | 1,586     | 1,416     | 1,416     | -       | -    |
|               | 임시적        | 2,376     | 2,923     | 2,923     | -       | -    |
|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 640       | 774       | 774       | -       | -    |
| 국고보조금 등       |            | 952,715   | 1,019,580 | 1,019,580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957,846   | 977,467   | 977,467   | -       | -    |

## 2) 세출

### 가) 세출예산 총괄

- 복지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세출예산은 11조 4,087억 5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4억 8천4백만원(0.6%)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복지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4예산     | 2025년도     |            | 증감(비율)        |
|--------|------------|------------|------------|---------------|
|        |            | 추경예산       | 기정예산       |               |
| 합 계    | 10,500,153 | 11,408,753 | 11,478,236 | △69,484(△0.6) |
| 행정운영경비 | 729        | 813        | 813        | -             |
| 재무활동   | 858,698    | 1,032,063  | 1,032,063  | -             |
| 사업비    | 9,640,726  | 10,375,876 | 10,445,360 | △69,484(△0.7) |

### 2) 부서별 세출예산

- 복지실 총 9개 과 가운데 5개 과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 증액편성은 장애인복지과 2건 (1억 7천7백만원, 0.1%), 장애인자립지원과 4건 (39억 1천8백만원, 0.3%), 돌봄복지과 1건 (19억 5천만원, 4.7%) 이며,
- 감액편성은 복지정책과 1건 (111억 8천2백만원, △0.2%), 어르신복지과 1건 (643억 4천1백만원, △1.7%), 돌봄복지과 1건 (5백만원 △33.3%)으로 나타남.



〈표〉 복지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안 부서별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기정예산<br>(A) | 추경내역<br>(B) | 추경 예산(안)<br>(C=A+B) | 증감률<br>(B/A) | 건수 |
|----------|-------------|-------------|---------------------|--------------|----|
| 계        | 11,478,236  | △69,484     | 11,408,753          | △0.6         |    |
| 복지정책과    | 4,879,493   | △11,182     | 4,868,311           | △0.2         | 1  |
| 디딤돌소득과   | 14,035      | -           | 14,035              | -            | 0  |
| 장애인복지과   | 278,322     | 177         | 278,499             | 0.1          | 2  |
| 장애인자립지원과 | 1,378,813   | 3,918       | 1,382,731           | 0.3          | 4  |
| 자활지원과    | 306,811     | -           | 306,811             | -            | 0  |
| 어르신복지과   | 3,982,240   | △64,341     | 3,917,898           | △1.6         | 1  |
| 고독대응과    | 75,968      | -           | 75,968              | -            | 0  |
| 돌봄복지과    | 556,157     | 1,945       | 558,103             | 0.3          | 2  |
| 1인가구지원과  | 6,393       | -           | 6,393               | -            | 0  |

- 금번 복지실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된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변경내시 통보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 복지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안 세부 내역

(단위:백만원)

| 연<br>번 | 세부사업명                | 기정예산<br>(A) | 추경내역<br>(B) | 추경예산(안)<br>(C=A+B) |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
|--------|----------------------|-------------|-------------|--------------------|-----------------------------------------------------|
|        | 총계                   | 11,478,236  | △69,484     | 11,408,753         |                                                     |
|        | 복지정책과(1건)            | 4,879,493   | △11,182     | 4,868,311          |                                                     |
| 1      | 기초생활수급자<br>급여 - 생계급여 | 1,574,622   | △11,182     | 1,563,440          | 국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감추경<br>(월별 집행률을 고려하여 불용이<br>예상되어 감액) |

| 연<br>번       | 세부사업명                          | 기정예산<br>(A) | 추경내역<br>(B) | 추경예산(안)<br>(C=A+B) | 추경 사유 및 산출내역                             |
|--------------|--------------------------------|-------------|-------------|--------------------|------------------------------------------|
| 장애인복지과(2건)   |                                | 278,322     | 177         | 278,499            |                                          |
| 1            | 최중증 통합돌봄<br>운영지원               | 146         | 114         | 260                | 국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증추경<br>(추가인력 인건비 반영 등)    |
| 2            | 최중증 발달장애인<br>24시간 개별<br>일대일 지원 | 4,500       | 63          | 4,563              | 국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증추경<br>(종사자 수당신설 등)       |
| 장애인자립지원과(4건) |                                | 1,378,813   | 3,918       | 1,382,731          |                                          |
| 1            | 최중증 발달장애인<br>통합돌봄서비스<br>주간개별형  | 3,940       | 56          | 3,996              | 국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증추경<br>(종사자 수당신설 등)       |
| 2            | 발달장애인<br>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27,102      | 2,400       | 29,502             | 국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증추경                       |
| 3            | 청소년 발달장애인<br>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 13,690      | 1,100       | 14,790             | 국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증추경                       |
| 4            | 최중증 발달장애인<br>통합돌봄서비스<br>주간그룹형  | 6,970       | 362         | 7,332              | 국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증추경<br>(종사자 수당신설 등)       |
| 어르신복지과(1건)   |                                | 3,982,240   | △64,341     | 3,917,898          |                                          |
| 1            | 기초연금 지급                        | 3,512,755   | △64,341     | 3,448,413          | 국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감추경<br>(월별 대상 인원수 감소)     |
| 돌봄복지과(2건)    |                                | 556,157     | 1,945       | 558,103            |                                          |
| 1            | 긴급복지지원                         | 41,661      | 1,950       | 43,611             | 국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증추경                       |
| 2            | 통합사례관리 지원<br>- 현장 슈퍼바이저운영      | 15          | △5          | 10                 | 국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감추경<br>(참여 자치구 변경(8개→5개)) |

다. 시민건강국

1) 세입

가) 세입예산 총괄

-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2,587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6,300만원(0.6%)이 감액되었음.
- 세입 감액의 주요 원인은 ① 국비 교부액 변경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39억원),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10억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지원(△6억원) 등 총 12건의 국고보조금 교부액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서 총 44억 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표〉 시민건강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2024년도<br>최종예산 | 2025년도 예산 |           |          |
|---------------|---------|----------------|-----------|-----------|----------|
|               |         |                | 기정예산(A)   | 추경 예산안(B) | 증감 (B-A) |
| 합 계           |         | 225,371        | 260,313   | 258,750   | △1,563   |
| 일반회계          |         | 225,371        | 260,313   | 258,750   | -        |
| 세외수입          | 경상적     | 40,991         | 38,073    | 38,073    | -        |
|               | 임시적     | 29,375         | 33,209    | 33,209    | -        |
|               | 행정제재부과금 | 5              | 5         | 5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국고보조금         |         | 150,613        | 183,743   | 182,180   | △1,563   |
| 지방채           |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2,872          | 3,746     | 3,746     | -        |

## 2) 세출

### 가) 세출예산 총괄

-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7,737억 5,000만원 대비 15억 2,900만원 감소( $\Delta 0.2\%$ )한 7,722억 2,100만원임.

〈표〉 시민건강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추경예산(안)               | 기정예산                  | 증 감                                  | 증감률          |
|----------|---------|-----------------------|-----------------------|--------------------------------------|--------------|
| 일반회<br>계 | 계       | (x182,180)<br>772,221 | (x183,743)<br>773,750 | (x $\Delta$ 1,563)<br>$\Delta$ 1,529 | $\Delta 0.2$ |
|          | 사 업 비   | (x181,800)<br>754,629 | (x183,363)<br>755,978 | (x $\Delta$ 1,563)<br>$\Delta$ 1,349 | $\Delta 0.2$ |
|          | 행정운영경비  | (x380)<br>10,597      | (x380)<br>10,777      | (x-)<br>$\Delta$ 180                 | $\Delta 1.7$ |
|          | 재 무 활 동 | 6,995                 | 6,995                 | -                                    | -            |

### 나) 부서별 세출예산

- 시민건강국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은 4개 과, 2개 사업소에서 편성되었으며, 추경 편성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건강관리과 6건(41억 3,500원), 감염병관리과 2건(1억 9,200만원) 순으로 증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정신건강과 5건(△55억 29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1건(△1억 8,000만원), 어린이병원 1건(△1억 4,600만원) 순으로 감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표〉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부서별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추경예산(안)<br>(A+B)      | 기정예산<br>(A)           | 추경내역<br>(B)         | 증감률<br>(B/A) | 건수  |
|---------|-----------------------|-----------------------|---------------------|--------------|-----|
| 계       | (x182,180)<br>772,221 | (x183,743)<br>773,750 | (x△1,563)<br>△1,529 | △0.2         | 16건 |
| 보건의료정책과 | (x16,805)<br>46,918   | (x16,805)<br>46,919   | (x△0)<br>△1         | △0.0%        | 1건  |
| 스마트건강과  | (x-)<br>62,838        | (x-)<br>62,838        | -                   | -            | -   |
| 건강관리과   | (x30,194)<br>165,649  | (x28,183)<br>161,515  | (x2,011)<br>4,135   | 2.6%         | 6건  |
| 정신건강과   | (x36,629)<br>125,486  | (x40,298)<br>131,015  | (x△3,669)<br>△5,529 | △4.2%        | 5건  |
| 감염병관리과  | (x74,138)<br>166,933  | (x74,042)<br>166,741  | (x96)<br>192        | 0.1%         | 2건  |
| 식품정책과   | (x9,711)<br>25,299    | (x9,711)<br>25,299    | -                   | -            | -   |
| 공공의료과   | (x13,109)<br>109,868  | (x13,109)<br>109,868  | -                   | -            | -   |
| 보건환경연구원 | (x1,516)<br>19,934    | (x1,516)<br>20,114    | (x-)<br>△180        | △0.9%        | 1건  |
| 어린이병원   | (x-)<br>10,562        | (x-)<br>10,708        | (x-)<br>△146        | △1.4%        | 1건  |
| 은평병원    | (x-)<br>20,772        | (x-)<br>20,772        | -                   | -            | -   |
| 서북병원    | (x79)<br>17,962       | (x79)<br>17,962       | -                   | -            | -   |

## 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 시민건강국 세출예산 추경안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총 16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증액편성은 총 4건, 49억 8,200백만원, 감액편성은 총 12건, 65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 분야별 추경예산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

| 사 업 구 분      | 사업건수    | 예산액    |
|--------------|---------|--------|
| 시민건강국 계      | 16개 사업  | △1,529 |
| ① 감추경        | 3개 사업   | △784   |
|              | 13개 사업  | △745   |
| ② 국비 확정내시 반영 | (증액 4개) | 4,982  |
|              | (감액 9개) | △5,727 |

- 세부내용별로 살펴보면 ① 감추경 시비 3개 사업에는, 공모절차 지연에 따른 참여 자치구 수 감소로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4억 5,800만원, 장비 구매자격 미충족 및 구매기한 연기에 따른 ‘어린이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에서 1억 4,600만원, 신축 강남농수산물검사소 관리비 절감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기본경비’에서 1억 8,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음.

### 〈감추경 시비 3개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 사업명                | 추경예산(안)<br>(A+B) | 기정예산<br>(A) | 증 감<br>(B) | 추경사유 및 내역                 |
|----|--------------------|------------------|-------------|------------|---------------------------|
| 1  |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 742              | 1,200       | △458       | • 공모절차 지연에 따른 참여 자치구 수 감소 |
| 2  | 어린이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 705              | 851         | △146       | • 장비 구매자격 미충족 및 구매기한 연기   |
| 3  | 기본경비(보건환경연구원)      | 2,838            | 3,018       | △180       | • 신축 강남농수산물검사소 관리비 절감     |

- ② 국비 확정내시 반영 13개 사업에서는, 중증 모자의료센터 지원(32억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가임력 검사)(13억 9,800만원), 결핵 관리-보건소 결핵관리(국비)(2억 400만원),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1억 8,000만원) 등 4개 사업은 증액편성되었고, 그 외 9개 사업의 경우 감액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기타 국비사업 변경내시 반영 13개 사업〉

(단위:백만원)

| 연번                      | 세부사업명                  | 편성사유           | 편성액               |
|-------------------------|------------------------|----------------|-------------------|
| 시민건강국                   |                        |                | (x△1,563)<br>△745 |
| 보건의료정책과 (1개 사업, 1백만원)   |                        |                | (x△0)<br>△1       |
| 1                       |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국비)    | 국고보조금 내시변경(감액) | (x△0)<br>△1       |
| 건강관리과 (6개 사업, 4,135백만원) |                        |                | (x2,011)<br>4,135 |
| 2                       |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 국고보조금 내시변경(감액) | (x△11)<br>△15     |
| 3                       |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     | 국고보조금 내시변경(감액) | (x△14)<br>△27     |
| 4                       |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증액) | (x90)<br>180      |
| 5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가임력 검사)   |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증액) | (x645)<br>1,398   |
| 6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지원 | 국고보조금 내시변경(감액) | (x△300)<br>△600   |
| 7                       | 중증 모자의료센터 지원           |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증액) | (x1,600)<br>3,200 |

| 연<br>번                   | 세부사업명              | 편성사유           | 편성액                 |
|--------------------------|--------------------|----------------|---------------------|
| 정신건강과 (4개 사업, △5,071백만원) |                    |                | (×△3,669)<br>△5,071 |
| 8                        |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   | 국고보조금 내시변경(감액) | (×△977)<br>△977     |
| 9                        |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 국고보조금 내시변경(감액) | (×△1)<br>△2         |
| 10                       | 정신건강증진시설 인력확충      | 국고보조금 내시변경(감액) | (×△95)<br>△198      |
| 11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 국고보조금 내시변경(감액) | (×△2,596)<br>△3,894 |
| 감염병관리과 (2개 사업, 192백만원)   |                    |                | (×95)<br>192        |
| 12                       | 결핵 관리-보건소 결핵관리(국비) |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증액) | (×102)<br>204       |
| 13                       | 한센병환자 관리지원(국비)     | 국고보조금 내시변경(감액) | (×△6)<br>△12        |



## 가. 여성가족실

## 1)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 사업(계속) &lt;사업별설명서 p.5&gt;

## &lt;사업 및 추가경정예산안 개요&gt;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 사업(2025년~, 시비100%)은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친화제도 이행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된 포인트 등급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sup>3)</sup> 및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sup>4)</sup>을 근거로 함.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 '등급 및 인센티브'<sup>5)</sup>>

| I 등급 및 인센티브(안) |                |                                                                                |
|----------------|----------------|--------------------------------------------------------------------------------|
| 등 급            |                | 인센티브                                                                           |
| 진입형<br>(100P~) | 성장형<br>(500P~) | 선도형<br>(1,000P~)                                                               |
|                |                |                                                                                |
|                |                | 서울시장 표창, 기업홍보 지원, 일반용역 가점(2점) 등<br>일반용역 가점(1점), 市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등               |
|                |                | <b>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보전, 이차차액 지원 및 보증한도 우대, 일반용역 가점(0.5점) 등</b> |

- 3)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 2.~6. (생략)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법인·단체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일·생활 균형 지원) ① 시장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2.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4. 자녀양육 부모의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 5) 양성평등담당관-11002, 2024.6.17.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 추진계획'

- 동 사업은 진입형 등급 이상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중 예산이 수반되는 3개 사업(①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月20만원x최대6개월), ②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月10만원x최대12개월), ③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90만원x1개월))을 위해 ‘25년도 본예산에서 시비 100%로 19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수요 예측 실패 사유로 금번 추경안에서 13억 4,928만원(70%)을 감액하여 5억 7,772만원으로 조정하였음.
-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과목으로 편성된 진입형 등급 이상의 인센티브 3종 지원금 중 ①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4억 2,350만원, ②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5억 550만원, ③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금 △4억 2,02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음.

〈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 사업, 추경안 명세

(단위 : 천원)

| 예산과목<br>(통계목)               | 추경예산<br>(안)     | 기정예산              | 증 감                | 산 출 내 역                                                                                                                                                   |
|-----------------------------|-----------------|-------------------|--------------------|-----------------------------------------------------------------------------------------------------------------------------------------------------------|
| 계                           | (x-)<br>577,720 | (x-)<br>1,927,000 | (x-)<br>△1,349,280 |                                                                                                                                                           |
| 시책추진<br>업무추진비               | (x-)<br>7,000   | (x-)<br>7,000     | (x-)<br>0          |                                                                                                                                                           |
| 사회보장적수혜금<br>(취약계층,<br>지방재원) | (x-)<br>358,220 | (x-)<br>1,707,500 | (x-)<br>△1,349,28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423,500천원</li> <li>◦ 육아휴직 동료응원 수당 지원 △505,500천원</li> <li>◦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 △420,280천원</li> </ul> |
| 공기관등에대한경<br>상적위탁사업비         | (x-)<br>212,500 | (x-)<br>212,500   | (x-)<br>0          |                                                                                                                                                           |

〈면밀한 수요예측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기할 필요〉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 사업은 중소기업의 양육친화 문화를 확산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2025년 7월 31일 기준 전

체 예산액 19억 2,700만원 중 1억 9,54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10.1%에 그치고 있음. 특히 인센티브 3종 지원금(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7억 750만 원 중 3,171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1.9%로 극히 부진하여 금번 추경안의 감액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짐.

〈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 사업, 집행률 현황

(2025.7.31.기준, 단위:천원)

| 구 분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률   |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7,000     | 5,250   | 75%   |
|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1,707,500 | 31,709  | 1.9%  |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212,500   | 158,465 | 74.6% |
| 합 계                   | 1,927,000 | 195,424 | 10.1% |

○ 집행부서는 ‘25년도 본예산 편성시 동 사업의 예산 추계방식에 대해 1차(‘24.6.~10.) 모집결과 참여 인증기업 수 151개를 근거로 ‘25년 말 까지 1,500개 참여를 목표로 선정하였고, 이 중 육아휴직자는 1,250명, 출산휴가자는 900명(기업당 0.6명)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함.

– 구체적으로 위의 예상수치를 바탕으로 ①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②육아휴직 동료응원 수당<sup>6)</sup>에 대해 각각 625명, ③서울형 출산휴가금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되어 675명으로 추계하여 예산 편성하였음.

○ 그러나 2025년 7월 31일 기준 인센티브 3종에 대한 지원금 신청 현

6) ‘②육아휴직 동료응원 수당’은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워 ‘①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 (\*중복지원 불가) (양성평등담당관-11002, 2024.6.17.)

황을 살펴보면 ①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②육아휴직 동료응원 수당의 신청인원은 27명으로 예산편성 목표(625명) 대비 4.3%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③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신청인원은 51명으로 최종 예산편성 목표(675명) 대비 7.5% 수준임.

〈표〉 인센티브 3종 지원금 신청 및 지급현황

(’25. 7. 31. 기준)

| 인센티브명      | 예산편성 (명)        | 신청 (명)<br>(예산편성 대비<br>신청 비율) | 지급 (명) | 지급금액(원)    |
|------------|-----------------|------------------------------|--------|------------|
| 대체인력 지원금   | 625<br>(100%)   | 27<br>(4.3%)                 | 11     | 7,283,640  |
| 동료응원수당     | 625<br>(100%)   | 27<br>(4.3%)                 | 13     | 2,300,000  |
|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 675<br>(100%)   | 51<br>(7.5%)                 | 26     | 22,125,520 |
| 계          | 1,925<br>(100%) | 105<br>(5.4%)                | 50     | 31,709,160 |

- 예산 편성 대비 신청이 미비한 이유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기업에 홍보 등이 부족했다는 이유도 들 순 있지만, 서울시는 동 사업이 ‘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기 전 ’24년 6월부터 동 사업에 대해 홍보를 이미 실시했으며<sup>7)</sup>, ‘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참여 인증기업 151개소를 모집하며 동 사업에 대한 사전홍보를 충분히 한 것으로 보여짐.
- 그러나 ’25년도 본예산에서 동 사업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1차 4개월(’24.6.~10.)간의 모집결과 참여기업 수 151개소라는 수치만으로 ‘25년도 말까지 1,500개 기업 참여라는 목표를 과다하게 설정하였고, 참

7) (서울시 보도자료) 2024.6.3.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 추진, ‘파견 인센티브’ 부여”

여기업 목표에서 육아휴직자(1,250명)와 출산휴가자(675명)를 추계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특성(직원 수, 가임기 연령의 여성 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 비율) 등 구체적인 근거없이 예산을 추계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짐.

- 향후 집행부서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특성을 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 추계 및 편성이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한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 나. 복지실

### 1) 발달장애인 돌봄관련 사업 <사업별설명서 pp.53~74>

- 국회에서는 당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안 심의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8)
- 이에 따른 발달장애인 돌봄관련 사업은, 최종증 통합돌봄 운영지원, 최종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이상 장애인복지과 소관 2개 사업),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개별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그룹형(이상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4개 사업) 총 6건임.

#### <표> 발달장애인 돌봄관련 추경사업 편성 현황

(단위:백만원)

| 연번           | 세부사업명                    | 기정예산<br>(A) | 추경내역<br>(B) | 추경예산(안)<br>(C=A+B) |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
|--------------|--------------------------|-------------|-------------|--------------------|---------------------------------------|
| 총계           |                          | 56,348      | 4,095       | 60,443             |                                       |
| 장애인복지과(2건)   |                          |             |             |                    |                                       |
| 1            | 최종증 통합돌봄 운영지원            | 146         | 114         | 260                | 국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증추경<br>(추가인력 인건비 반영 등) |
| 2            | 최종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 4,500       | 63          | 4,563              | 국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증추경<br>(종사자 수당신설 등)    |
| 장애인자립지원과(4건) |                          |             |             |                    |                                       |
| 3            | 최종증 발달장애인                | 3,940       | 56          | 3,996              | 국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증추경                    |

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07.04.).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연<br>번 | 세부사업명                         | 기정예산<br>(A) | 추경내역<br>(B) | 추경예산(안)<br>(C=A+B) | 추경 사유 및 산출내역                       |
|--------|-------------------------------|-------------|-------------|--------------------|------------------------------------|
|        | 통합돌봄서비스<br>주간개별형              |             |             |                    | (종사자 수당신설 등)                       |
| 4      | 발달장애인<br>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27,102      | 2,400       | 29,502             | 국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증추경                 |
| 5      | 청소년 발달장애인<br>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 13,690      | 1,100       | 14,790             | 국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증추경                 |
| 6      | 최중증 발달장애인<br>통합돌봄서비스<br>주간그룹형 | 6,970       | 362         | 7,332              | 국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증추경<br>(종사자 수당신설 등) |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관련 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sup>9)</sup>에 근거한 사업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악된 욕구 및 지원 필요도에 따라 통합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발달장애인 중 도전행동(자해·타해)을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어 돌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2022년 관련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2024년부터 시행하게 됨.<sup>10)</sup>
- 금번 증액편성된 발달장애인 대상 돌봄사업의 대상과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4.6.11.)

10) 서울시는 법률 시행전부터 일부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시범사업 등의 형태로 먼저 제공해왔음.

〈표〉 발달장애인 돌봄관련 추경사업 현황

| 연<br>번 | 세부사업명                          | 이용대상                                                                         | 제공기관             | 주요 사업내용                                                             |
|--------|--------------------------------|------------------------------------------------------------------------------|------------------|---------------------------------------------------------------------|
| 1      | 최중증 통합돌봄<br>운영지원               | 발달장애인 중 일상생활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도전적행동이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 서울시발달장애인<br>지원센터 | 사업유형별 대상자 선정 조사, 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 이용자 배치 및 관리, 보호자교육, 전문위원회 운영 등        |
| 2      | 최중증 발달장애인<br>24시간 개별<br>일대일 지원 | 발달장애인 중 일상생활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도전적행동이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 수행기관             | 의미있는 낮활동 지원 및 안전한 주거지원 등 24시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
| 3      | 최중증 발달장애인<br>통합돌봄서비스<br>주간개별형  | 성인 발달장애인 중 ① 기능제한 (의사소통 어려움, 도전적 행동 등) 이 있고, ② 지원필요도가 높은 (환경·중복장애 등) 최중증 장애인 | 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시설에 인프라 보강과 전문인력을 제공하여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            |
| 4      | 발달장애인<br>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18세 이상 지적·자폐 장애인                                                             | 바우처 제공기관         | 취미·여가, 자립 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욕구 반영한 프로그램 제공                          |
| 5      | 청소년 발달장애인<br>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 6세 ~ 18세 미만 지적·자폐 장애인                                                        |                  |                                                                     |
| 6      | 최중증 발달장애인<br>통합돌봄서비스<br>주간그룹형  |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바우처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통한 그룹형 1:1 낮활동 서비스 제공<br>- 일상생활 훈련, 취미 활동, 자립생활훈련 등 |

- 금번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은 정부 추경안 편성에 따른 내시액의 반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에는 수행기관 공모 지연 등으로 불용률이 51%에 달하는 등 집행상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특성상 종사자를 확보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서울시 전체 서비스 제공 인원 30명 가운



데 4명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었음.

-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에는 수행기관을 4개소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sup>11)</sup>이며, '25년 7월말 기준 집행률도 40.6%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금번 추경안은 공모기관이나 인원 확대가 아니라, 돌봄인력에게 지급하는 전문수당을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배 인상하는 내용으로, 현장에서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인력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에 비해 제공기관 및 종사자 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어, 추경으로 인한 수당 인상이 인력 확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지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겠음.

〈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공기관 현황 ('25. 7월 기준)

| 연번 | 제공기관명      | 종사자 수 | 이용인원 수   | 소재지  | 운영개시일       |
|----|------------|-------|----------|------|-------------|
|    | 합계         | 36    | 정원20/현원6 |      |             |
| 1  | 한국재활재단     | 15    | 정원4/현원4  | 서대문구 | '24.10.     |
| 2  | 엔젤스헤이븐     | 11    | 정원8/현원2  | 은평구  | '25.5.      |
| 3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 8     | 정원4/현원0  | 도봉구  | '25.10.(예정) |
| 4  |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 2     | 정원4/현원0  | 동작구  | '25.10.(예정) |

11) 도봉장애인복지관과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은 '25년 5월에 선정되어 주택 리모델링 및 종사자 사전 교육 중이며, 9월에 수행기관 추가 공모 예정에 있음.

## 다. 시민건강국

### 1.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분석 <사업별설명서 p.163>

#### <사업 및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자치구별 여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구 심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 내 마음돌봄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으로,
- 서울시는 ① 2025년도 본예산에 13억 원을 편성, 지난 25년 3월부터 공모를 통해 ‘자치구 심리지원센터’ 총 10개소를 신규 확충(1개 센터당 최대 2억 지원)할 계획<sup>12)</sup>이었으나, ② 자치구 공모일정 지연(조례 개정 후 25년 6월~)으로 자치구 교부금액의 축소가 필요하여,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원을 감액한 후 12억 원을 편성한 바 있음.

#### <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25년                  |                            |                                   | 증감    |        |
|-------------|------------------------|----------------------------|-----------------------------------|-------|--------|
|             | ① 본예산                  | ② 제1회 추경                   | ③ 제2회 추경                          | ①-③   | ①-③/①  |
|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 1,300                  | 1,200                      | 742                               | △ 558 | △ 42.9 |
| 편성사유        | 공모를 통해 자치구 심리지원센터 신규확충 | 자치구 교부금액 축소에 따른 감액 (△ 100) | 자치구 심리지원센터 공모 후 불용예상액 감추경 (△ 458) |       |        |

- 이번 ③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5년 7월 ‘자치구 심리지원센터’ 공모 선정위원회 개최결과, 당초 목표(10개소 12억 원, 제1회 추경안) 보다

12) 시민건강국(2025.2.) 2025년 자치구 마음상담소 설치계획.

(세부 추진계획) 자치구 심리지원센터(마음상담소)는 기존에 9개 자치구가 11개소를 구비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서울시는 전 자치구로 확대 설치(24년 9개구 11개소 → 25년 21개소 → 26년 25개구 27개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함.

신청(6개 자치구 7억 4,200만원 신청) 자치구 수가 적어 4억 5,800만 원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감추경을 위해 제출된 것임.

### 〈분석 의견〉

향후 서울시는 동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수요 예측 및 추계를 바탕으로 자치구 교부금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본예산은 지난 「24년 제14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2024. 10. 10.)<sup>13)</sup>, 현행조례에는 자치구 설치비 지원에 관한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조건부 적정’을 받음.
- 이에, 서울시는 현행조례를 개정하여 자치구 심리지원센터(가칭: 마음상담소)의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7)」을 시장 제출한 바 있음.
-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위 시장 제출 조례안(의안번호 2647)에 대한 사전 심사(2025. 4. 28.) 과정에서 “향후 설치될 ‘자치구별 심리지원센터’의 역할 및 업무가 이 조례상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한 후, 해당 안건을 미처리(상정 보류)한 바 있음.
- 이로 인해, 서울시는 미처리된 시장 제출 안건(안번호 2647)의 내용을 일

---

13) 지난 24년 10월 10일 개최된 「‘24년 제14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했을 때는 조례상 서울시장은 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권역별로 설치,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별로 1개소당 2억의 자본금을 투자하면서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조례상의 자치구 설치·지원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하면 조례 개정을 조건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심의 결과: 조건부)이 있었음.

부 수정하여 지난 제331회 정례회에 다시 시장 제출안(「서울특별시 심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1)」)과 함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치구 공모일정 지연(당초: 25년 3월 → 변경: 25년 6월부터)에 따른 사업비(자치구 교부금액) 축소가 예상되어, 1억 원을 감액해 12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바 있음.

-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31회 정례회 심의 과정에서 현재까지 설치 희망 의사를 밝힌 자치구는 3곳(용산구, 강북구, 마포구)에 불과하여, 당초 목표한 개소 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제1회 추경안에 제출된 동 사업 자치구 교부금의 감액 규모(1억 원) 적정성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신규 확충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운영되는 자치구(9개소) 심리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리모델링 비용 등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한 바 있음.

#### <자치구 심리지원센터(마음상담소) 기존 운영현황 및 설치 희망 수요조사 결과>

| 기존 자치구 심리지원센터(마음상담소) 운영<br>현황<br>(9개구 11개소)            | 자치구 심리지원센터(마음상담소) 조성 관련<br>수요조사<br>(설치희망 3개 자치구) |
|--------------------------------------------------------|--------------------------------------------------|
| 강동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성북구, 영등포구, 은평구(2개소), 중구, 중랑구(2개소), | 용산구, 강북구, 마포구                                    |

####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회의록(2025년 6월 17일(화))>

- 오금란 위원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동안 권역별로 했던 4개를 바꿔서 이제 광역 하나와 자치구 운영하는 걸로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 시민건강국장 : 네.
- 오금란 위원 : 그런 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부분은 좋은데요. 지금 보니까 이미 9개소는 개소를 해서 하고 있고 심지어 강동구 같은 데는 2007년부터 운영을 했더

라고요. 그렇죠?

- 오금란 위원 :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13억 정도 잡아놨는데 지금 11개소 정도를 더 개소해서 20개 정도로 맞추겠다 이런 계획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11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만 1~2억 정도 최대한 주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9개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해 준 게 있었나요?
- 시민건강국장 : 9개 자치구에서 각각 설치한 상담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지원을 하지는 않았고요. 구 단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설치한 것인데 저희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해서 설치하겠다는 이유는 자치구별로 상담소의 분포가 너무 불균형해서 일부 자치구는 구 안에 상담소가 5개 미만인 구도 몇 개 있습니다. 제일 적은 곳은 2개소만 상담소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 구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상담소가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일단 상담소가 적은 구를 먼저 우선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금란 위원 : 그러면 11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3개 정도만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서.....
- 시민건강국장 : 거기는 확정이고 추가로 지금 하겠다고 검토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더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설치해서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 곳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원칙적으로 구립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서울시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 보강이 좀 더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시설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 오금란 위원 : 지금 11개 것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설치비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 시민건강국장 : 그렇습니다. 설치비만 지원합니다.
- 오금란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설치비만 지원해서 너무 지원율이 낮은 건 아니에요?
- 시민건강국장 :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구비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25개 구의 각 상담기관들 다 운영비를 매칭하거나 시비로 전액 지원했을 경우에 대한 재정 부담도 있고 또 자치구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비 부담을 구가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요. 일단은 시설비 지원을 전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오금란 위원 : 그러면 제 생각에는 9개소,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이 9개소에도 그동안 해 왔던 공을 봐서 뭔가 지원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설치비, 리모델링비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3개밖에 아직은 확정이 안 됐다고 하니 하반기에 나머지를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시민건강국장 : 추가로 협의하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 오금란 위원 : 그래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 시민건강국장 : 당초 목표대로 11개소 다 하기가 일부 쉽지 않은데요 한 6~7개 정

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곳에 오래된 곳은 시설이 낡은 곳들이 있어서 그런 쪽 시설 보강에 지원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오금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원래 목표 세웠던 거를 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하여 시민건강국은 추가로 협의하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어 6~7개소의 신규 확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는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자치구 심리지원센터(9개구 11개소)에 대한 시설보강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음.

○ 그런데 지난 25년 7월 ‘자치구 심리지원센터’ 공모 결과, 5개 자치구만 신규 설치를, 1개 자치구만 기능 보강을 신청하는 등 당초 서울시 목표(10개소 12억 원, 제1회 추경안) 대비 신청이 저조해, 이번 제2회 추경안을 통해 불용예산액 4억 5,800만 원을 감추경하게 된 것인데,

#### < 서울심리지원센터 선정결과: 6개 자치구>

(단위: 천원)

| 연번 | 자치구명 | 신청예산    | 비고   |
|----|------|---------|------|
| 총계 |      | 742,000 |      |
| 1  | 용산구  | 200,000 | 신규설치 |
| 2  | 마포구  | 200,000 | 신규설치 |
| 3  | 강동구  | 200,000 | 신규설치 |
| 4  | 동대문구 | 50,000  | 신규설치 |
| 5  | 양천구  | 42,000  | 신규설치 |
| 6  | 관악구  | 50,000  | 기능보강 |

○ 만약 이번 서울시의 제2회 추경안 편성이 없었더라면, 동 사업은 지난 제1회 추경안에서 1억 원을 감액하고도 4억 5,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향후 서울시는 동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수요 예측 및 추계를 바탕으로 자치구 교부금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 어린이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사업별설명서 p.180>

가. 현 황

- ‘어린이병원 의료 및 행정 장비 확충’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서 치료에 적극 이용 가능한 ‘의료기기’ 및 ‘행정장비’를 확충하여 어린이 병원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대시민 의료서비스 만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 이번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25년도 기정예산 약 8억5천2백만원에서 약1억4천5백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그 세부 감액의 내용은 ① ‘재활 운동성 시험평가 장치’ ‘구매예산’ 약 4천4백만원 감액 및 ② ‘발달센터 캐비닛 등 행정장비’ ‘구매예산’ 약 1억1백만원 감액임.

< 어린이 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                      |              |              |               |
|----------------------|--------------|--------------|---------------|
| 2 예산 (안) 설 명         |              |              |               |
|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              |              |               |
| 구 분                  | 추경예산(안) (A)  | 기정예산 (B)     | 증감 (A-B)      |
| 계                    | (x-) 706,348 | (x-) 852,117 | (x-) Δ145,769 |
| 자산및물품취득비             | (x-) 705,348 | (x-) 851,117 | (x-) Δ145,769 |
| 도서구입비                | (x-) 1,000   | (x-) 1,000   | (x-) 0        |

□ 예산과목 증감내역

| 과목구분     |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             |
|----------|---------------------------------------------------------------------------------------------------------------------------------------------------------|-------------|
| 자산및물품취득비 | ○진료부 장비구입                                                                                                                                               | △ 145,769천원 |
|          | -의료장비                                                                                                                                                   | △ 44,000천원  |
|          | ▷재활 운동성 시험 평가 장치<br>△ 44,000,000원*1대                                                                                                                    | △ 44,000천원  |
|          | -진료부 행정장비                                                                                                                                               | △ 101,769천원 |
|          | ▷발달센터 캐비닛 등 행정장비 구입<br>△ 101,769,000원                                                                                                                   | △ 101,769천원 |
|          | 증감사유                                                                                                                                                    |             |
|          | ○ 특정제품으로 구매가 필요한 재활 운동성 시험평가장치의 서울의료원<br>의료정책실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업체의 GMP 인증서 만료 및 미갱신으로 자격<br>요건 미충족으로 구매 불가함<br>○ 2026년 발달센터 리모델링 공사 준공 후 구매 예정 물품으로 감추경 필요 |             |

나. 분석의견

[특정제품 선정 ‘사전검토’ 및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 필요성’]

- ‘어린이병원’은 2025년 본예산에 약 4천4백만원을 ‘재활운동성 시험평가장치’ 구매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동 예산은 시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25년 본 예산으로 확정되었음.

□ 예산(안) 산출근거

| 과목구분 | 2024년 본예산                                           | 2025년 예산(안)                                 |
|------|-----------------------------------------------------|---------------------------------------------|
|      | ○ 진료부 장비구입<br>= 477,671천원                           | ○ 진료부 장비구입<br>= 343,517천원                   |
|      | - 의료장비<br>= 442,903천원                               | - 의료장비<br>= 117,930천원                       |
|      | ▷ 로봇보조정형운동장치(상지형)<br>297,000,000원*1대<br>= 297,000천원 | ▷ 수술용현미경<br>12,100,000원*1대<br>= 12,100천원    |
|      | ▷ 로봇보조정형운동장치(좌용형)<br>128,700,000원*1대<br>= 128,700천원 | ▷ 재활운동성 시험평가장치<br>44,000,000원<br>= 44,000천원 |



- 그 후 어린이병원은 2025년 5월 16일 동 장치를 구매하고자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특정제품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근거해 ‘특정 제품 선정 사전검토서’를 작성하였음.
- 그리고 그 과정에서 ① 필요성(타당성), ② 성능 및 품질 우수성, ③ 가격 적정성, ④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⑤ 기타 검토사항(기술적 검토) 등을 ‘사전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특정제품 구매’가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음.

〈 어린이병원 - 특정제품 선정 사전 검토서 (’25. 5. 16.)〉

|        |                     |
|--------|---------------------|
| 심사 안건명 | 운동성시험평가장치 특정제품 선정심사 |
|--------|---------------------|

[공사(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260

□ 사업규모

- 제 품 명 : 운동성시험평가장치(동작인식 장비)
- 수 량 : 1Set
- 등 급 : 2등급 의료기기
- 용 도 : 입원 및 외래환자 작업치료 평가 및 상지기능 개선 훈련
- 소요인력 : 재활의학과 의사 1명, 작업치료사 3명

□ 사 업 비 : 44,000천원

□ 계약방법 : 조달계약

|         |                                                                                                                                         |
|---------|-----------------------------------------------------------------------------------------------------------------------------------------|
| 종합 검토의견 | 예산 범위, 본원 내원 환자의 치료 적합성,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 가능성, 전문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부, 그리고 장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특정제품(운동성 시험 평가 장비)의 구매는 매우 적합한 선택으로 판단됨 |
|---------|-----------------------------------------------------------------------------------------------------------------------------------------|

- 그 후 「특정제품 규칙」 제2조 ‘본문’에 근거해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에 (1) 특정제품 선정심사 요청서, (2)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 (3) 특정제품 선정 사전검토서를 제출하였음.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 제2조(선정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b>발주부서에서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의뢰</b> 하는 경우에는 <b>다음 각 호의 자료를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b> 하여야 한다.<br>1. 특정제품 선정심사 요청서 : 별지 제1호서식<br>2.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 : 별지 제2호서식<br><b>3. 특정제품 선정 사전검토서 : 별지 제3호서식</b> |

- 그리고 동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특정제품 조례”라 한다)」 제3조(심사대상 및 범위)제1항제2호, 제5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기능)에 근거하여,
- 동 장치의 (1) 필요여부, (2) 성능 및 품질 우수성, (3) 특정제품 가격 적정성, (4)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심사하여 ‘해당 사업’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음.
- 심의에 참여한 위원 4명 모두 ‘적합’ 및 ‘승인’ 의견 제출

※ 총위원 5명〔내부2, 외부3〕中 위원장은 「특정제품 조례」 제5조제3항에 의해 ‘위원회 운영은 총괄하되 안검심사 및 의결에 참여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제6조(위원회 기능) ① <b>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b> 하여 해당 사업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b>최종 선정</b> 한다.<br>1. 특정제품 필요여부 2. 특정제품 성능 및 품질 우수성 3. 특정제품 가격 적정성 4. 특정제품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

- 그런데 그 후 동 제품 구매 최종 의사결정은 다시 번복되었음. 그리고 번복 이유는 “특정제품으로 구매가 필요한 재활 운동성 시험평가장치의 서울의료원 의료정책실 사전검토 결과, 해당 업체의 GMP 인증서 만료(2019년) 및 미갱신 즉,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구매가 불가”하였기 때문임.
- 그리고 이에 따라, 어린이병원은 최종적으로 동 장치의 구매가 현 시점에서 불가능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이번 2차 추경예산에 동 장치 구매 예산을 감액안으로 제출한 것임.
- 그런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2]와 그 위임을 받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1등급’이 아닌 ‘2등급 내지 4등급’ 의료기기(소프트웨어 포함) 제조업자는 ‘적합성인정등 심사(GMP)’를 받아야 하며<sup>14)</sup>,
  - [식약처 고시 제2조] “적합성인정등 심사”란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품질로 일관성 있게 생산됨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 적합성인정등 심사 표시 (제11조 관련)

##### 1. 적합성인정등 심사 표시 도안 가. 도안



14)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제3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의료기기(이하 "수출용 의료기기"라 한다) 또는 1등급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기준을 따르되,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  
 의료기기 GMP 종합 해설서-8개정(2023) p. 13 “수출만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의료기기 또는 1등급 의료기기는 이 기준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되, GMP 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

- 이에 더해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에서는 “제13조제1항〔제조업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을 위반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 또는 생산관리·수입관리·수리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예정하고 있음.
- 따라서, 어린이병원은 ‘2등급 의료기기’인 ‘동 장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 ‘동 장치’의 ‘제조자’가 GMP 인증서의 보유 여부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사료됨.

○ 제 품 명 : 운동성시험평가장치(동작인식 장비) ㄱ  
 ○ 수 량 : 1Set ㄱ  
 ○ 등 급 : 2등급 의료기기 ㄱ  
 ○ 용 도 : 입원 및 외래환자 작업치료 평가 및 상지기능 개선 훈련 ㄱ  
 ○ 소요인력 : 재활의학과 의사 1명, 작업치료사 3명 ㄱ  
 □ 사 업 비 : 44,000천원 ㄱ  
 □ 계약방법 : 조달계약 ㄱ

- 아울러, ‘특정제품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자문 검토의견서에서도 외부위원 2명이 ‘동 장치’의 2019년 GMP 인증 유효기간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더욱 그러함.

|         |                                                              |  |
|---------|--------------------------------------------------------------|--|
| 종합 검토의견 | - GMP 유효기간 확인, 납품단가가 비싸<br>된다면 어린이 환자 재활치료가 도움이<br>될것으로 사료됨. |  |
| 유지 관리성  | 유지관리는 후리가 없어 보임.<br>19년도 GMP 유효기간이 만료됨.                      |  |

- 그러나, 이러한 외부위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특정 제품 심사위원회’의 최종 의사결정은 심의위원 4명 모두의 ‘적합’ 및 ‘승인’ 판단이었음.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서울의료원에 ‘유선문의’를 통해 해당 업체가 GMP 인증서 만료 및 미갱신으로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구매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은 후 번복되었음.
- 즉, ‘특정제품 심사위원회’가 ‘특정제품 조례’ 제6조에 따른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적합’ 및 ‘승인’을 주었으며, 최종적인 ‘부적합 의사결정’은 ‘비공식적인’ ‘서울의료원’의 유선통화자문을 통해 이루어졌음. 그리고 이에 따라 편성된 예산 약 4천4백만원을 감추경하게 되었음.
- 결론적으로, 동 약 4천4백만원의 특정 장치 구매예산 감액은 2025년 본예산에 ‘장치 구매’를 위해 계획되어 책정된 예산임에도, 특정 제조사의 특정 제품 관련 인증서 유효기간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지 못하여 부득이 발생한 ‘감액’이라 사료됨.
- 따라서, 향후에는 ‘특정 의료기기 구매’ 관련 ‘검증 역량’을 강화하여 꼭 필요한 의료기기가 제때에 사용되어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만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어린이 발달센터 리모델링 사업의 차질 없는 일정 관리 필요성]

- ‘어린이병원’은 2025년 본예산에 ‘어린이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예산을 약 1억4천만원 편성하였음. 그리고 이와 연동하여 ‘발달센터(예술센터 포함)’의 ‘행정장비’ 예산 약 2억2천5백만원을 함께 편성하였음.

〈2025년 어린이 발달센터 리모델링 관련 본 예산〉

| 과목구분 | 2024년 본예산                                                                        | 2025년 예산(안)                                |
|------|----------------------------------------------------------------------------------|--------------------------------------------|
|      | ○ 전년수준 반영                                                                        |                                            |
| 시설비  | ○ 예술센터 리모델링 시설공사<br>= 988,000천원                                                  | ○ 어린이 발달센터 확장 개선 공사<br>= 140,000천원         |
|      | - 시설공사비<br>988,000,000원*1식<br>= 988,000천원                                        | - 공사 설계비<br>140,000,000원*1식<br>= 140,000천원 |
|      | 중감사유                                                                             |                                            |
|      | ○ '24년 예술센터 음악치료실 방음공사 등 완료, '25년 발달센터 치료실 및 행정실 등 29개실 확장 공사 설계 위해 140,000천원 편성 |                                            |

| 과목구분     | 2024년 본예산                                           | 2025년 예산(안)                                        |
|----------|-----------------------------------------------------|----------------------------------------------------|
| 자산및용품취득비 | ○ 진료부 장비구입<br>= 477,671천원                           | ○ 진료부 장비구입<br>= 343,517천원                          |
|          | - 의료장비<br>= 442,903천원                               | - 의료장비<br>= 117,930천원                              |
|          | ▷ 로봇보조정형운동장치(상지형)<br>297,000,000원*1대<br>= 297,000천원 | ▷ 수술용현미경<br>12,100,000원*1대<br>= 12,100천원           |
|          | ▷ 로봇보조정형운동장치(좌완형)<br>128,700,000원*1대<br>= 128,700천원 | ▷ 재활운동성 식염평가장치<br>44,000,000원<br>= 44,000천원        |
|          | ▷ 전동평행동(물리)<br>8,400,000원<br>= 8,400천원              | ▷ 치과 유니트체어<br>35,800,000원*1대<br>= 35,800천원         |
|          | ▷ 페디랩 외 7종<br>8,803,000원<br>= 8,803천원               | ▷ 1천만원이하 의료장비<br>2,169,160원(평균가)*12개<br>= 26,030천원 |
|          | - 행정장비<br>34,768,000원<br>= 34,768천원                 | - 행정장비<br>= 225,587천원                              |
|          | ○ 간호부 장비구입<br>= 389,604천원                           | ▷ 발달센터/예술센터<br>115,625천원<br>= 115,625천원            |
|          | - 의료장비<br>= 323,700천원                               | ▷ 발달센터 인지 행동작업<br>109,962천원<br>= 109,962천원         |

- 그런데, 당초 '25년 1분기 준공으로 예정되었던 '발달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의 '일정'이 '하반기 준공(10월 예정)'으로 변경되었음. 그리고 이러한 '설계용역' '준공' 시점의 변경에 따라 실제 공사의 시점 역시 변경되었고, 이와 연동하여 '발달센터'의 '행정 장비 등'의 물품구매 역시 연동되어 변경될 수 밖에 없었음.
- '설계 용역' 일정 변경의 주된 사유는 '설계'의 사전 절차인 '건축기획' 등의 일정이 '전문가들'과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예상보다 늦어졌기 때문으로 파악됨. ※ '건축 기획 용역' 준공 ('25.8.23.)

### 〈'25년 발달센터 치료 인프라 확대 세부계획〉

| VII 인프라 확충 연차별 추진 계획 |          |          |          |          |
|----------------------|----------|----------|----------|----------|
| □ 공간 재구성 일정          |          |          |          |          |
| 설계용역                 | 시공사 선정   | 공사 발주    | 공사 완료    | 치료 시작    |
| 140백만원               | -        | -        | 2,222백만원 | -        |
| '25년 1분기             | '25년 3분기 | '25년 3분기 | '25년 4분기 | '26년 1분기 |

- 결론적으로, 동 약 1억1백만원의 “발달센터 캐비닛 등 행정장비 구입” 감추경 예산(안)은 '발달센터 리모델링 사업'의 '설계 용역' 일정이 '당초 예상한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실제 '공사'가 늦어져 연동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향후 어린이병원은 동 어린이 발달센터 리모델링 사업의 차질 없는 일정 관리를 통해, 예상과 다른 '감추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